

점검 사항	올바른 작업계획 수립과 작업장 내 안전 환경 조성							
단계	기획단계	설치단계	운영단계	철거단계	작업환경	작업계획	작업안전	자재관리
	○	○		○	○	○		
참여 주체	주최자		기획사			시공사		
	○		○			○		
관련 법령 및 참고 기준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: 출입의 금지&gt;</p> <p>- 추락, 기계의 갑작스러운 작동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,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</p>							
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: 비계 등의 조립·해체 및 변경&gt;</p> <p>-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</p> <p>-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</p> <p>-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</p>							
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: 조도&gt;</p> <p>-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초정밀작업 : 750lux 이상      2. 정밀작업 : 300lux 이상</p> <p>3. 보통작업 : 150lux 이상      4. 그 밖의 작업 : 75lux 이상</p>							
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: 작업의 제한&gt;</p> <p>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</p> <p>1.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     2.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</p> <p>3.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</p>							
	<p>&lt;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: 적용 범위&gt;</p> <p>-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</p>							
세부 기준 (권장 사항)	위험성이 있는 작업장 내 해당 작업자 외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는가?							
	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작업 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?							
	야간작업 시 150lux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는가?							
	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는가?							
	기상이변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준비를 하였는가?							
	작업순서가 포함된 설치 및 해체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?							
	그 외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?							
점검 결과	양호		보통		불량		해당 없음	
문제점				보완계획				

점검 사항	작업 및 해체계획서에 따른 올바른 작업							
단계	기획단계	설치단계	운영단계	철거단계	작업환경	작업계획	작업안전	자재관리
	○	○		○			○	
참여 주체	주최자		기획사			시공사		
	○		○			○		
관련 법령 및 참고 기준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: 보호구의 지급&gt;</p> <p>-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.</p> <p>예) 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: 안전모  2.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: 안전대  3. 물체의 낙하·충격, 물체에의 끼임,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: 안전화 등</p>							
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: 안전대의 부착설비&gt;</p> <p>-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</p> <p>-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 점검</p>							
	<p>&lt;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: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&gt;</p> <p>-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등</p>							
	<p>&lt;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: 자격·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&gt;</p> <p>-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, <b>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, 폭발·발화·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은</b>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할 것</p>							
	<p>&lt;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교육시간, 내용, 방법&gt;</p> <p>-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는 <b>일용근로자</b> :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</p> <p>- <b>일용근로자</b> : 채용시 1시간 이상,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</p> <p>- <b>건설 관련 작업 일용근로자</b> : 건설업 기초 안전·보건교육 4시간 이상</p>							
세부 기준 (권장 사항)	작업자는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등)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?							
	작업근로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·아래에서 동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가?							
	해체 전 대상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해체작업을 수행하는가?							
	해체는 사전에 계획된 순서대로 실시하며, 수평 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고 있는가?							
	해체 시 구조물 전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가?							
	작업자에게 작업 내용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?							
점검 결과	양호		보통		불량		해당 없음	
문제점				보완계획				

참고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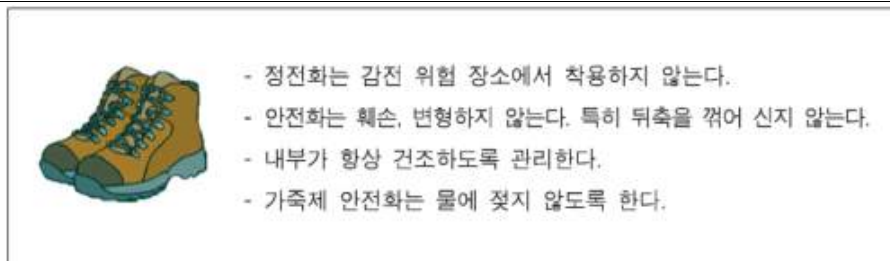
안전모 착용 방법



안전대 착용 방법



안전모 종류



안전화 주의사항

점검 사항	철거 후 자재의 올바른 관리							
단계	기획단계	설치단계	운영단계	철거단계	작업환경	작업계획	작업안전	자재관리
				○				○
참여 주체	주최자		기획사			시공사		
	○		○			○		
관련 법령 및 참고 기준	-							
세부 기준 (권장 사항)	해체된 자재들은 구조물 위에 적재하는 등 방치하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는가?							
	해체 후 자재에 결함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였는가?							
	해체 후 결함이 확인된 자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였는가?							
점검 결과	양호		보통		불량		해당 없음	
문제점				보완계획				